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5
----------	------

발의년월일 : 2013. 07

발의자 : 김동규·김동수·김영철·김정택·
김철진·나정숙·박영근·박은경·성준모·송두영·
신성철·윤미라·윤태천·이민근·이형근·전준호·
정승현·정진교·한갑수·함영미·황효진 의원(21인)

□ 주 문

-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학교의 운영비의 50%에 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건의함.

□ 제안이유

- 교육용 전기료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4.5%를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92.8원, 교육용 전기요금은 108.8원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더욱 비쌈(17.2%).
- 지속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학교운영비중 고정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전기료로 인하여 더위와 추위에도 냉난방을 축소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함으로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필요함.

□ 결의안 : 덧붙임 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 현재 국회에 제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 증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2년 12월 4.5% 등 꾸준한 인상으로 5년간 2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인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8%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대책 행정은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에 부담시키고, 다시 각급 학교 운영비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 행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 아니라 포기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08.8원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kWh당 92.8원보다 17.2%나 더 높게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미래를 책임질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2015년도까지 디지털 교과서로 스마트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각 학교에서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냉·난방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정부에서 모를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

육환경 개선책을 내놓기에 앞서 무조건적인 절전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쾌적한 교육환경만큼은 정부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복지예산이 약 100조에 달하고 있어 역대 정부의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실만큼은 건강하게 공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실환경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률 논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높은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 예산을 축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위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63.4%의 학교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한바 있으며, 현19대 국회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방침(일반용의 70%)과 같이 전기사업법 제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전기의 공급약관 및 인가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와 76만 안산시민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15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